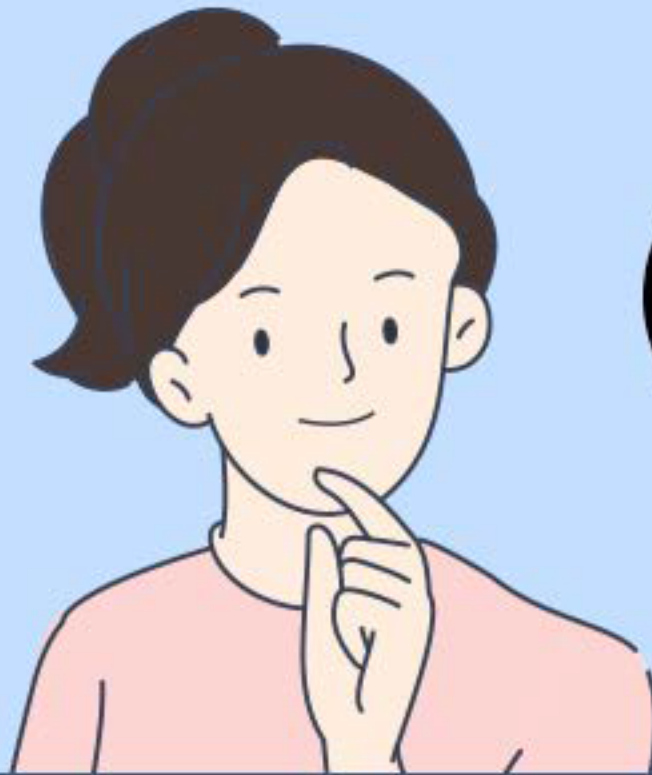




**근로감독관이  
사업장 나가면  
✓ 꼭 확인한다는 그 것!**

**③ 최저임금**

# 최저임금 is 기본



2023년 최저임금이  
얼마죠?

✓ **시급은?**



9,620원

✓ **월급은?**



2,010,580원

주 40시간&주휴시간 포함, 월 209시간(고시기준)



**위반시** 3년 이하 징역 또는  
2천만 원 이하 벌금

Q1. 질문있어요!!

월급이 2,010,580원  
이상이면 최저임금을  
준수한 건가요?

그렇지만은 않습니다.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 
따져봐야 합니다!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?



소정근로에 따른 임금  
(기본급 등)

+



상여금은 최저임금  
월환산액의 5% 초과분  
('23년 기준)

\*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.

+



복리후생비(식비, 교통비 등)는  
최저임금 월 환산액 1%  
초과분('23년 기준)

\*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# Q2. 질문있어요!!


저는 1주 40시간 일하는데  
월 220만 원을 받습니다.  
최저임금을 준수한  
금액 맞나요?

|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-|
| 기본급     | 180만 원 |
| 식대      | 10만 원  |
| 교통비     | 10만 원  |
| 시간 외 수당 | 20만 원  |
| <hr/>   |        |
| 합계      | 220만 원 |


##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

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|
| 기본급     | 180만 원     |
| *식대·교통비 | 179,895원   |
| <hr/>   |            |
| 합계      | 1,979,895원 |

\*식대·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2,010,580원의 1%인 20,105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('23년 기준)

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

1,979,895원

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

209시간

= 9,473원

'23년 최저임금

9,620원
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시  
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!

**최저임금 위반!**

4대 기초노동질서  
현장예방점검의날

꼭 지켜자~! 최저임금



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 
최저임금 제대로 주고 받고  
있나 확인해보기

바로가기 

[https://www.moel.go.kr/  
miniWageMain.do](https://www.moel.go.kr/miniWageMain.do)